

덴마크신문평의회

I. 신문평의회 설립배경

덴마크신문평의회(the Danish Press Council)는 1964년에 설립되었다. 원래 덴마크에는 덴마크신문지법에 근거하여 1938년에 설립된 취소정정위원회(Board of Denial and Correction)가 있었다. 동위원회는, 신문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신문사가 정정을 거부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처결하는 기관이었다. 그런데 덴마크 언론인들은 1960년에 이르러 스웨덴식의 새로운 신문평의회의 설치를 결의했다. 덴마크 일간신문협회 (the Joint Association of Danish Daily Newspapers)의 총회는 새 평의회의 정관을 마련했으며, 종래의 취소정정위원회보다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신문평의회 설치안은 3년 동안의 검토기간을 거친 끝에 1964년 이르러서야 실효를 보게 되었다.

II. 신문평의회의 구성

덴마크신문평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회 의장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은 의장대리를 둘 수 있으며, 의장대리 역시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된다.

위원 5인 가운데 3인은 덴마크일간신문협회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3인의 위원은 각각 대리위원 1인씩을 둘 수 있으며, 대리위원의 임기 역시 4년이다.

위원 5인 가운데 1인은 근로자교육협회(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에 의해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동위원은 대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리위원의 임기 역시 2년이다.

의장 및 각 위원들은 재임명이 허락된다.

III, 신문평의회의 활동

덴마크신문평의회는 독립적 윤리기구로서, 언론으로 하여금 건전한 신문실천요강(Good Press Practice)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게 함으로써 언론인의 자질을 높이고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덴마크신문평의회의 권한은 1968년에 다소 확대 되었으며, 범죄사건보도지침과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도규정의 영역까지 심의범위를 넓혔다. 현재 덴마크기자협회는 신문평의회의 후원단체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동협회는 신문평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덴마크 일간신문협회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 덴마크신문평의회는 특정개인이나 특정기관 및 단체가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호소를 직접 하게 될 경우 그 심의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사안이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경우 불만호소가 없더라도 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제기된 불만호소라도 이를 심의할 수 있다.

덴마크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일간신문이 덴마크 일간신문협회에 가입된 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엔 일간지를 제외한 주간지·誌와 기타 정기간행물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1972년 11월부터 덴마크전문지간행협회, 지역신문연합회, 지방정치신문협회가 평의회후원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심의 대상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덴마크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인으로부터 보충자료를 입수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신문사의 진술과 소명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는 없다. 동평의회는 평결을 내리되 문서화된 자료를 토대로 다수결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덴마크신문평의회가 내린 평결문을 해당 신문사는 게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지만, 동신문사가 평결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평의회는 법적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평의회는 또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금전적 배상문제를 평결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불만호소에 대한 지지여부만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덴마크신문평의회는 6개월마다 사례를 실은 보고서를 간행하고 있다.

IV. 신문평의회 정관

본 정관은 1960년 11월 23일에 개최된 덴마크 일간신문협회 (the Joint Association of Danish Daily Newspapers)의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1년 10월 27일 개정되었다.

1. 신문평의회는 의무는 신문실천요강(Good Press Practice)을 위반한 정기간행물 내지 특정 대중매체의 보도에 관하여 평결 또는 그 밖의 발표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신문실천요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본 평의회는, 언론보도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본 평의회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특별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간주할 경우 평의회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사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다. 평의회가 특별사안을 심의할 때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이 본인의 동의없이 언급되어선 안된다.

3. 본 평의회는 접수된 불만 호소건을 평의회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고 각하하든가 또는 평결을 내릴 수 있는 심의대상 선정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불만호소건은 본평의회 의장에 의해서 각하될 수 있다. 의장은 또한 언론침해가 발생한 지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불만호소사안은 기각할 권한을 갖고 있다.

4. 본 평의회가 불만호소사안을 심의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불만호소의 내용을 문서로 전하며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 평의회는 사건 심의중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보충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화해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본 평의회가 평결문을 당사자 양측에 보내주게 되면, 해당 언론사는 지체없이 그리고 보충적인 논평을 가하지 않고 평결문을 게재해야 한다. 본 평의회는 평결문을 덴마크국립통신사인 리차우스뷰로(Ritzaus Bureau)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또한 평결문 게재는 지면 가운데 독자들이 명백히 볼 수 있는 위치와 뚜렷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5. 본 평의회는 평결을 내리는 데 있어 만장일치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반대의견이 지상에 게재되지는 않는다. 평결을 위한 표결시 찬반 동수이면 본 평의회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평의회 표결은 비밀에 부친다. 평의회 위원 중 불만호소사건과 관련된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위원의 참석은 가능하다.
6. 본 평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1인의 위원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그가 평의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은 또한 의장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 (2) 5인 위원 중 3인은 덴마크일간신문협회에 의해 임명된다. 동협회는 또한 대리위원 3인을 임명할 수 있다.
 - (3)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은 근로자교육협회(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에 의해 임명되며, 대리위원도 동협회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사회각계 대표위원 1인(대리위원 포함)만 2년이며, 의장 및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4년이다.
7. 본 평의회는 자체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사무국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V. 신문실천요강(Good Press Practice)

-덴마크신문평의회 제정

가. 공정 보도

1.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다. 가능한 한 정보공급 전에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정보원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정보가 개인적 이익과 얽혀 있다거나 왜곡기미가 엿보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3. 취재한 정보가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편견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관계자 외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정보가 공표되기 전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질의, 응답 내지 공박식으로 된 보도문은 비약없이 연속적으로 게재되어야 한다.
5. 지면에 공표되는 보도는 그것이 스트레이트뉴스(straight news)인지 논평인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6. 기사의 제목과 부제는 기사본문에 의해 실체화되도록 정해져야 하며, 동일한 원리가 논평기사에도 적용된다.
7. 부정확한 보도는, 그것에 대한 진실이 입증되자마자 즉시 자발적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독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나. 보도와 시민의 권익

1. 개인의 사생활의 성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공익에 현저히 준하지 않는 한 삼가야 한다. 일반 각 개인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자살사건이나 자살미수사건은 공익에 현저히 준하지 않거나 특별사유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보도를 금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 보도를 하게 될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3. 범죄희생자나 사고에 관한 보도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일원리가 목격자 및관계자의 가족과 친척에게도 적용된다. 사진이나 삽화가 함께 게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본문기사와 광고란 사이에는 선으로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상업성을 띤 기사나 사진은 원칙적으로 게재해서는 안되지만 공익에 현저히 준할 경우엔 예외가 될 수 있다.
5. 타인의 사건이 보도에 남용되어선 안 된다. 자신의 견해표명이 가져 올 여파를 미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 무지, 절제부족감 등이 보도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재판보도

1. 재판보도도 가항과 나항에서 언급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재판보도에 관한 원리는 소송제기 전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3. 재판보도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기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견해를 질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재판에 관한 보도는 재판의 결말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다루어야한다.
4. 특정인의 집안의 내력, 직업, 인종, 국적, 종교 및 활동단체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보도내용의 요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
5.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 한 공정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죄인인 것처럼 미리 보도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 형사사건보도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 혹은 무죄임을 밝혔는지의 여부도 언급되어야 한다.
6. 재판보도에 있어서, 언론사는 스스로 재판관계기사 게재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과 사건관계자의 성명게재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은 공익에 현저히 준하지 않는 한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
7. 지상에 알려진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보도하려고 할 경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보도는 경찰이나 경찰의 견해가 표명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 광범위하게 공개됨으로써 현저한 공익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선 안된다. 또한 확실한 증거하에서 경찰에 대한 보도가 구체적으로 실제화 된다고 가정 되어야만 한다면, 전술한 동일원리가 적용되어선 안된다.
8.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중요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선

주목 받을 필요가 없다. 기타 뉴스와 관련하여 형사사건보도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성명이 대체로 공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